

# 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안내

-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('12.6.29. 식품위생법령 개정·공포)
-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·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(기존 중량당 가격 표시 대상과 동일)
  - ※ 조리된 음식(보쌈, 김치찌개 등)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대상 아님
-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, 종전의 1인분(중량표시)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음(기존 가격표에 수정표시 가능함)

## [100g당 가격표시 예시]

현 행		→	개 선 안	
갈비 1인분 180g	18,000원		갈비 100g	10,000원 (1인분 180g ..... 18,000원)
등심 1인분 150g	33,000원		등심 1인분 150g	33,000원 (100g ..... 22,000원)

-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 시행
- 2013년 1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㎡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표시 시행 (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